

레이와 ( 令和 ) 2 년 2 월 28 일

출입국 재류 관리청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창구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감염확대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재류신청 창구의  
혼잡 완화 대책으로서 3 월 중에 재류기간 만료일 (주의)을 맞이하는 재류 외  
국인 (재류자격「단기체재」및 「특정활동 ( 출국준비기간 ) 」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은 제외) 의 재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및 재류기간 갱신 허가신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의 재류기간 만료일로 부터 1 개월 후 까지 접수를 받  
아 드립니다.

(주의) 일본국에서 출생한 분 등 3 월 중에 재류자격 취득신청을 해야  
하는 분도 포함됩니다.